

형사사법에 있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고찰 : 긴급구조 및 수사를 중심으로

이 원 상*

국 | 문 | 요 | 약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석유나 광물 같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위치기반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민간부문에서는 개인정보 가운데 개인위치정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형사사법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범죄예방, 수사, 형집행 및 보호관찰에 있어서 개인위치정보는 매우 요긴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개인정보의 하나인 개인위치정보의 침해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로서의 보호 뿐 아니라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의 동의나 법적 근거, 또는 법원의 통제가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수집·이용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형사사법에서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긴급구조를 위해서 경찰이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으며, 수사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수사를 수행하는 정도가 높아지면서(소위 기지국 수사) 많은 논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고찰해 본 결과, 개인의 긴급구조에 있어서 개인의 동의 및 개인의 생명·신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 구조요청자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대한 제한은 가급적 없어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오남용이나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긴급구조요청의 경우에는 보가 강화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사에 있어서 개인의 위치정보는 이미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구태여 위치정보 가운데 GPS를 이용한 위치정보의 사용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연유도 없다. 다만 현재와 같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법원의 형식적인 허가나 법원의 허가도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원의 통제시스템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형사사법에 있어서 개인위치정보의 활용 수요역시 민간기업 만큼이나 많아질 것으로 예견되므로 개인위치정보를 형사사법에서 활용하고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 주제어 :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긴급구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I. 서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GPS 관련 기기나 모바일 컴퓨팅 기술 등 개인의 위치를 측량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술들도 급속히 발전하였다. 이로 인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주 정밀하게 알아내는 것이 가능해 졌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의 위치를 측량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개인의 위치는 단순히 좌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개인위치정보가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정보와 결합된 개인위치정보는 보다 의미 있는 정보를 생성하여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위치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 등이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1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2,258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2009년(81만 명)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라고 할 수 있다.¹⁾

기존의 휴대폰의 경우 그 위치정보는 기지국 정보를 통해서 가능하였으며, 그 정확도는 반경 수 Km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소 범위가 넓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기지국에 의한 위치정보 파악 뿐 아니라 GPS에 의해 위치파악이 가능하며, 그 정확도도 반경 20~30m까지 높아졌다.²⁾ 특히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나 새로운 SNS 등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해서³⁾ 사용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마케팅이나 위치기반광고⁴⁾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애플 등과 같은 정보통신 기업들은 위치정보를 이용하

1) 20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참조(<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P02050302&dc=K02050300&boardId=1078&boardSeq=33781>).

2) 물론 기지국간 거리가 좁은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수 백미터로 줄어들 수 있으며, 다수의 기지국에 잡히는 신호를 통해서 삼각측량법을 이용하면 50m 내외로 그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61260>).

3)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란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한 모든 유형의 서비스”를 지칭한다; 안순태/서수민, “스마트폰 위치기반광고 애플리케이션”, 한국광고홍보학회 제14권 1호, 한국광고홍보학회, 2012, 132면.

4) 위치기반광고란 “소비자의 위치에 따른 맞춤형 메시지를 모바일 단말기를 통하여 전달하는 광고”를 의미한다; 위와 동일.

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위치정보는 형사사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사법기관도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수원의 살인사건⁵⁾에서 112가 위치정보를 적시에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긴급구조시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고, 이를 통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이라고 함)”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민간부분이나 수사기관에서 위치정보의 수요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개인정보에 속하는 위치정보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나는 동의 없이 또는 동의 범위를 넘어서 개인위치정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일부 IT 기업들이 개인의 동의 없이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이 많은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애플과 구글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서 애플과 구글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⁶⁾ 다른 하나는 수사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다. 앞에서 언급한 수원 살인사건에서는 경찰이 위치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을 수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는 경찰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이제까지 경찰 독자적으로 위치정보를 알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법률은 개정되었지만 수사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위치정보와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본 논

5) 2012년 4월 1일, 살인범은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성폭행이 실패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하였으며, 1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5117>). 이 때,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112 상황실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논란거리가 되었다.

6)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애플은 약 10개월 동안 사용자가 위치서비스를 꺼놓았음에도 위치정보를 서버로 전송하였고, 또한 위치정보의 일부가 사용자의 휴대폰에 캐쉬파일로 저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구글은 애플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휴대폰에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암호화 조치 없이 캐쉬파일로 저장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애플은 3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구글은 시정명령만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참조(<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P05030000&dc=K05030000&boardId=1042&boardSeq=31655>).

문에서는 이 개인위치정보가 현행 형사사법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최근 개정된 위치정보보호법과 수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개인위치정보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의 개인위치정보의 지위와 사용실태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도출해 본 후(II), 이를 통해 형사사법에서 개인위치정보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선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III).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통해서 논지를 정리할 것이다(IV).

II. 현행 형사사법에서의 개인위치정보

1. 개인위치정보의 이중보호

현행 법률을 보면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로서 보호됨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로서 보호되는 이중적 보호를 받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위치정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적인 기능과 함께 위치정보만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그 정보의 쓰임새의 범위가 보다 다양해 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정보 차원에서 바라볼 때, 개인위치정보도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인격적 주체성을 가지며,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정보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⁷⁾ 우리 현재는 개인정보를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 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조사나 수집, 보관, 처리,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⁸⁾ 따라서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

7) 정혜영,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체계에 관한 분석”, 공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10, 409면 이하.

8) 현재 2005.5.26. 99헌마513.

짓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는 “위치”라는 것이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함 또는 그 자리”⁹⁾를 의미하는 것이고, 개인위치정보는 이를 디지털화 한 것이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정보에 관해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함)에서의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보면 현행법이 상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현재에서 상정하고 있는 개념보다 그 범위가 더욱 넓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위치정보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나타내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인격적 주체성 역시 갖게 된다. 개인위치정보의 개인정보 관련성은 정부의 관련기관의 개인정보 예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¹⁰⁾

유형 구분	개인정보 항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9)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9397300>.

10) 이 부분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집한 영상도 개인정보가 되며, 영상의 범위는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등이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의 예시에서는 영상정보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수익정보	보험(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고용정보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성격 테스트결과 직무태도
법적정보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 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Log file), 쿠키(Cookies)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성향

〈개인정보 예시〉¹¹⁾

무엇보다 개인정보는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 최근 한 설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은 개인정보의 가치를 적어도 2,100만원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심지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다고 한 응답자들도 많았다.¹²⁾ 이처럼 개인이 개인정보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가치 이상으로 개인정보의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개인정보는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1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nns/ntc/inf/personalInfo.do>); KISA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 부분(http://privacy.kisa.or.kr/kor/privacy/privacy01_new.jsp); 특히 KISA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예로 신분관계(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내면의 비밀(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심신의 상태(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사회경력(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경제관계(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기타 새로운 유형(생체인식정보(지문, 홍채, DNA 등), 위치정보 등)으로 예를 들고 있다.

12)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28310&kind=3>; 이 설문의 결과에 따르면 특히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소송을 하겠는가”라는 물음에(복수 응답을 허용) 99%가 ‘주민등록번호’, 98%가 ‘금융정보’, 52%가 ‘개인신상정보’, 46%가 ‘주소 및 연락처’, 30%가 ‘의료정보’, 15%가 ‘직업관련 정보’라고 대답하였다.

가지고 있다. 얼마 전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온라인 쇼핑 운영자와 무단 유출된 정보를 보험회사에 한 건당 약 2,900원씩 총 45만 건을 판매하여 13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벌어들인 텔레마케팅 업자가 구속되었다.¹³⁾ 또한 중국의 해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건당 10원 정도에 수 백만건을 구입하여 스팸메일을 대신 발송하여 7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¹⁴⁾ 이런 사례들을 볼 때,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그 자체가 바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즉, 자신만의 독창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창조하여 판매하거나 기존의 데이터를 새롭게 분석 및 처리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어 판매할 수 있는 정보재를 만들어 내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는 그 자체가 정보재가 된다. 이는 이미 정보화 사회에 진입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뱅킹이나 주식거래, 전자상거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관관계 등 상당수의 경제·사회시스템이 개인정보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⁵⁾ 특히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들의 수익 모델은 광고수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도 개인위치정보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다. 개인위치정보 자체의 경제적 가치는 별 볼일 없을 수 있지만, 서비스 업체에서 개인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해주는 교통정보 서비스, 음식점 소개 등과 같은 생활정보 서비스, 이동 중 정보가 제공되는 텔레메틱스 서비스 등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서 개인위치정보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개인위치정보는 직접적으로 개인의 인격주체성이나 경제적 가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제2선에서 이를 지원해 주는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위치정보는 그 자체로도 특별한 법률적 보호를 받는다. 위치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란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13)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30983&kind=1>.

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152135475&code=940202.

15) 정혜영, 앞의 글, 410면.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의미한다. 특히 동 법에서 개인위치정보는 단순히 이동성 있는 물건이나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대한 정보인 “위치정보(제2조 제1호)”와 구별되어 보다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다.¹⁶⁾ 따라서 위치정보의 수집은 단순히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동법 제15조), 개인위치정보는 보다 까다로운 동의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다(동법 제18조). 또한 개인위치정보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목적이 다 하였을 경우 즉시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이처럼 개인위치정보가 개인정보로 보호됨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자체로도 보호되기 때문에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개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적인 근거나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개인위치정보를 동의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운전자가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 긴급출동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서비스 업체에서는 신속하게 문제의 장소에 도착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개인위치정보 동의를 받고 그 위치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이 경우 개인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¹⁷⁾ 하지만 개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동의 없이 형사사법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형사사법에서 개인위치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6) 이에 대해서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이는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안순태, “스마트폰 위치기반 광고와 상업적 표현의 가치”, 방송통신연구 제76호, 2011년 가을호, 210면.

17) 하지만 어떤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가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비록 개인이 위치정보 사용에 동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형사사법에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형사사법에 있어서 개인위치정보는 크게 범죄 발생시, 범죄 수사 시 그리고 형집행 및 종료 시의 세 부분에서 중요하게 이용될 수 있다. 범죄 발생 시를 보면, 수원 살인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범죄 피해의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긴급구조를 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범죄 피해를 목전에 두고 있거나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 또는 범죄 피해를 막 당한 이후라도 경찰이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한다면 범죄피해가 발생하거나 적어도 보다 심한 범죄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 수사 시 위치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개인위치정보는 범죄의 단서를 위해서나 범죄의 증거로 매우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이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개인위치정보를 알아내어 수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다. 이는 최근 들어 범죄에 위치주적이 가능한 첨단기들이 사용되면서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형의 집행 과정(가석방) 및 형을 종료 한 후 보호관찰을 위한 전자발찌 착용을 통해서 개인위치정보가 이용되기도 한다.¹⁸⁾¹⁹⁾ 이 가운데 전자발찌와 관련해서는 비록 위

18) 우리나라는 가석방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2008년 9월 1일부터 위치추적 전자감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억제 및 재사회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법무부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그 도입 논의에 있어서 성범죄자의 재사회화 보다는 재범억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재범억제의 효과성 여부가 이 제도를 유지하는 주요 목적이 될 것이다. 위치추적장치의 범의억제에 대해서는 조운오, “GPS 위치추적 전자감시의 범의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지 제37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481면 이하 참조.

19)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 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될 수 있다. 따라서 형의 집행 및 형 집행 종료 이후에 개인의 위치정보가 이용되는 것이다. 특히 동 법률과 관련해서 동 법률이 2010년 4월 15일에 개정되면서 부칙에 소급효를 인정하여 동법시행 이전의 관련범죄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는 이창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형사정책 제23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김봉수, “전자감시장치 부착의 법적 성격과 확대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고 제36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55면 이하; 장연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법적 성격과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제10권 제2호, 한국보호관찰학회, 2010.

치추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포함하는 다양한 논문들이 이미 발표되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형사사법에서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내용을 긴급구조를 위한 경우와 수사를 위한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최근 위치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긴급 상황이 112에 신고 되었을 때, 경찰이 독자적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출동할 수 없었다. 이는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가 없으면 수집·이용될 수 없으며,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 개인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으며, 구 위치정보보호법에서는 경찰이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²⁰⁾ 그러므로 경찰은 수원 살인사건 이후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소방방재청과 양해각서(MOU)를 맺어 위치추적 공고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²¹⁾ 하지만 수원 살인사건 이후 여론은 경찰의 위치추적권 획득에 대한 필요성이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우려보다 우세하게 나타나면서 경찰에게 위치추적권을 부여하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이 5월 2일에 재적의원 161명 중 찬성 152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²²⁾

개정된 법률의 요점은 긴급구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의 획득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개정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호에서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

20) 경찰에 대해서 위치정보획득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18대 국회에 들어 2008년 이후 최인기의원등 13인(의안번호 제1800486호), 변재일의원등 25인(의안번호 제1880873호), 신상진 의원등 16인(의안번호 제1805759호) 등이 법률안을 제안했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었다.

21) <http://news.kbs.co.kr/society/2012/05/02/2470363.html>.

22) 제307회 국회본회의회의록을 보면 본 법률안이 성급하게 통과되다 보니 본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되지 못하고 다른 4개의 법률들과 함께 단순 표결과 함께 통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되지만 긴급구조를 위해서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추가한 것은 전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동법 제30조 제2항에서 경찰관서와 위치정보사업자로 하여금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매 반기별로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제29조 제6항에서 경찰관서의 위치정보요청이 있었던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또는 특별한 장애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한 것, 그리고 제39조에서 경찰관서에서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은 후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본 법률에서 중요한 사안가운데 하나는 긴급구조요청자의 범위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동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그 범위를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 제2항 제2호에서는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 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의 경우에는 긴급구조요청자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다만 동조 제1호에서는 구조를 요청한 자의 동의를 받아서 그의 개인위치정보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므로 장난스런 구조요청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고 해서 구조 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기술적인 지원과 이를 위한 법률 규정이 있어야 한다.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지만, 기지국에 의한 위치정보보다 정확한 GPS에 의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5명 가운데 1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국내 스마트폰의 경우 사용자의 GPS정보를 통신사로 보내는 기능이 있는 반면, 외산 스마트폰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으며, 또한 이동통신사가 위치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개의 통신사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²³⁾ 그렇기 때문에 GPS를 통한 개인위치정보 확인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위

해서는 휴대폰 업체와 통신업체에 이를 강제할 수밖에 없다. 다만 휴대폰 업체와 통신업체가 기술적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기오류로 인한 문제점도 존재한다. 소위 ‘부산 여대생’ 사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사 기지국의 오류가 발생하여 제대로 된 개인위치정보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²⁴⁾

결국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보다 정밀한 규정을 함과 동시에 관련 업체들의 기술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개정에 관련 업체들에 대한 위치정보획득을 위한 기술적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긴급구조의 가능성을 극대화 하는 것에는 다소 못 미치는 아쉬움이 있다.²⁵⁾

나. 수사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최근 미국에서는 개인위치정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뉴욕 맨하탄의 검사가 ‘월가를 점령하라’의 시위참가자를 색출하기 위해 트위터측에 월 스트리트 시위 참가자의 트위터 계정에 있는 사용자 정보(이메일 주소, 트윗 내용 등) 제공에 대한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한 것이다. 이 사건은 Disorderly Conduct (불법방해)에 속하기 때문에 체포 당시에 길 위에서 의도적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따라서 뉴욕시 검사들은 Stored Communications Act를 적용하여 트위터측에 소환장을 발부하였다.²⁶⁾

23) 이 때문에 5천만이 넘는 사용자 가운데 위치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통신업체 사용자 2천6백여만명, 그 가운데 국산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천여만명(eofir 19.8%)만이 GPS를 통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고 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20510/46128072/1>.

24)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997625&cp=nv>.

25) 변재일의원 등 25인이 제안하였던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긴급구조 신호를 발송할 수 있는 긴급입력수단을 장착하도록 하여 기술적 수단을 강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안 및 검토 보고서 참조(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0T8B0F9V0V8M1W5E1F71IG3F1V8M8).

26) 이에 대해서 이에 트위터는 정보 제공 명령은 유효한 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 통신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하며, Stored Communication Act 또한 이 경우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 명령을 폐기하도록 뉴욕주 판사에 요청하였다;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2/05/twitter-fights-government-subpoena-demanding-occupy-wall-street-protester-info/>.

본 사건이 흥미 있는 것은 검사가 압수·수색 대신에 소환장을 보낸 것이다. 소환장에는 트위터의 소환자에게 관련 정보를 가지고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본 사안의 요점은 피의자가 시위 당시 부록클린 다리에서 트위터에 글을 올렸으며, 이를 통해 트위터에는 피의자의 개인위치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중하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서 Stored Communications Act를 적용하여 압수·수색영장 대신에 소환장을 통해 개인위치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었다.²⁷⁾ 현재 구글의 반발로 본 사건은 계속해서 진행중에 있다.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기관에게 있어서 개인위치정보는 매우 매력 있는 단서이자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에 있어서 개인위치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타당한 법률적 근거라고 언급한 이유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경우 미국의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소한 사안에 있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집·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사기관이 수집·이용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로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합리적인 범위로 축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IP 주소, 그리고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²⁸⁾ 하지만 여기에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만을 규정

27)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le_id=20120514150851;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의 Stored Communications Act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은 소환장(Subpoena)과 같은 제도는 없다.

28)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의 정의규정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사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 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등이 포함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11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문서 건수가 11만 1,058건으로 2010년 동기 대비 8.2% 감소하였고, 전화번호 수는 1,646만 2,826건으로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P05030000&dc=K05030000&boardId=1042&boardSeq=33678> 참조.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GPS와 같은 개인위치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을 통해서 획득할 수 없게 된다.²⁹⁾ 따라서 수사기관이 GPS와 같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수사를 하고자 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의 정의에 이를 포함시키거나 위치정보보호법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³⁰⁾ 그러나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의 범위에 GPS와 같은 다른 개인위치정보를 해석상 포함시키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서 보면 무리일 수 있다. 이 법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와 통신의 자유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을 제한하는 것은 해석적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입법을 통해서 새롭게 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정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2005년 1월 27일(법률 제7371)에 개정되면서 규정되었다. 그 이유는 그동안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과 제공이 법원의 허가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의해서 가능하였기 때문에 이를 법원에 의해서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³¹⁾ 따라서 GPS와 같은 개인위치정보 역시 동 법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수 있다. 다만 본 법률에서 상정하고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역시 현행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실상 실시간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획득한다는 우려가 있어 현재에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³²⁾

29) 이는 경찰이 수사에 활용하고 있는 소위 ‘기지국 수사’를 보면 잘 나타나고 있는데, 경찰이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는 사용자의 휴대폰이 어느 위치의 기지국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는 2011년도에 아이폰에 저장되는 위치정보를 미국 과학수사당국이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경찰청도 개인 휴대폰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수사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기지국의 위치정보만을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425006012> 참조.

30) 다만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희망버스’ 시위에서 불거진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에서 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실시간 위치추적은 실질적으로 압수수색과 동일하기 때문에 법원의 형식적인 허가가 아닌 영장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므로 이런 점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1319.html.

3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6606&ancYd=20050127&ancNo=07371&efYd=20050127&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32) 따라서 소위 희망버스 관련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http://news188.ndsoftnews.com/bbs/list.html?idxno=18244&table=bbs_6.

III. 형사사법에서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의 개선방안

1. 긴급구조에서의 개선방안

긴급구조를 위해 경찰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위치정보보호법에 해당 규정이 도입되는 과정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그동안 그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경찰에 의해서 개인위치정보가 오·남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긴급구조에 있어서는 긴급구조요청자의 긴박한 상황과 경찰의 오·남용을 함께 고려하기 보다는 이를 이원적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긴급구조요청자의 신변안전 및 피해방지(또는 최소화)를 위해서 가급적 긴급구조를 위해서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은 넓혀 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넓혀진 가능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치정보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긴급구조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이용은 “범죄에 임박한 긴급 상황에서의 위치정보이용의 가능성을 높이고, 수집된 위치정보가 오·남용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원칙가운데 이번에 개정된 규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에 개정된 위치정보보호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구조 받을 사람에 대해 개인 위치정보를 요청 받기 위해서는 긴급구조요청을 한 사람이 일정한 관계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반면에 제2항에서는 사실상 누가 구조요청을 하더라도 구조 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점, 제5항에서 긴급구조를 위해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도록 한 점 등은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이용의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또한 제2항에서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서 목격자의 개인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제6항에서 위치정보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개인에게 경찰에 위치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점, 제8항에서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점 (위반 시에는 제39조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제30조 제2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점 등은 개

인위치정보 남용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긴급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후속적으로 관련 업체가 긴급구조를 위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독려하거나 지원,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긴급구조에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제 공은 경찰이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얼마나 실질적인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여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경찰에 의한 오·남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긴급구조가 적시에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런 요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허위로 긴급구조요청을 하는 것이다. 긴급구조에 대한 허위신고는 긴급구조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거나 오작동 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작 긴급구조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 살인사건에서도 신고를 담당한 경찰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만성적인 허위신고로 인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최근 경찰청에서는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112신고를 한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민·형사상 대응을 할 것을 밝혔다.³³⁾ 실제로 경찰은 근래에 허위로 112신고를 한 사안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동시에 각각 1,184만원(성남수정경찰서)과 1,382만원(안양만안경찰서)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더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적극적 적용 및 경범죄 처벌법상의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법정형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의 경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독일이나 프랑스 형법에서는 직무집행의 범위를 권력 작용으로 제한하여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사를 강제력으로 실현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제한이 없다.³⁴⁾

33) 경찰청 보도자료 “국민을 위한 경찰긴급전화 악용하는 허위·장난 112신고 민·형사 책임 적극적 부과 추진” 참조; <http://www.police.go.kr/announce/newspdsView.do?idx=98557&cPage=1>.

34) 다만, 우리 판례는 행정사무의 편의를 목적으로 한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1982.11.23. 선고 81도1872); 배종대, 형법각론, 161/3.

특히 우리 판례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³⁵⁾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³⁶⁾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을 근거로 볼 경우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찰도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136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서는 폭행·협박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폭행·협박의 개념을 아무리 광의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허위신고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포섭될 수는 없게 된다. 그러므로 사실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서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불법의 정도가 행정벌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물론 한두 번 정도의 허위신고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비례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정 위치정보보호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이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성향이 표출된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이에 경찰에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경우 따라서 경찰의 경우에도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보다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법률로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경우에는 비록 본인이 타인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개인위치정보가 침해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법 제40조 제5호의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35) 대법원 1999.9.21. 선고 99도383 판결.

36) 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도3485 판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같은 정도의 불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치정보보호법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긴급구조가 보다 용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App)을 보급·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의미 있을 것이다. 긴급구조를 위한 스마트폰 앱을 설치할 경우 위치 정보에 대해 사용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필수가 된다. 그러므로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앱을 보급하는 것은 사용자 동의를 통해서 개인위치정보 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긴급구조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성폭력 등 긴급한 상황에서 지인이나 수사기관에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도 하였으며,³⁷⁾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시작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통해서 112 앱을 설치를 통해 개인위치정보를 통해 긴급구조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³⁸⁾

2. 수사에서의 개선방안

수사에서의 개인위치정보 이용을 보면, 현재에도 소위 ‘기지국 수사’를 통해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수사가 가능하다. 이에 수사기관은 그 범위를 넓혀서 GPS와 같은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사에 있어 수사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긴급구조와는 다른 오·남용의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개인위치정보는 프라이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수사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반발이 있다. 그러나 기지국을 통한 개인위치정보가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수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적절한 절차를 규정

3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5352288>.

38) <http://www.mopas.go.kr/gpms/resource/popup/sos.html>; 최근에도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피의자를 검거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원터치 SOS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바로 위치를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19/2012041901660.html.

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경우까지 수사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는 다른 개인정보의 경우 법원의 통제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법원의 실질적인 통제가 있다면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수사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수사에 있어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의 초점은 이용 여부에서 통제적인 이용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실질적인 통제’라고 말하는 이유는 통신사 실확인자료의 경우 비록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헌법재판소의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대한 판결이었지만,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에 대한 법원의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³⁹⁾ 이는 비록 법률에서는 법원에 통제를 규정해 놓고 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1만건이 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서 법원이 제대로 된 통제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법원의 허가는 압수·수색 영장보다는 그 통제 수위가 낮기 때문에 법원에 의한 강화된 통제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는 것으로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그리고 ID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법원의 통제도 없이 획득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 제83조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하반기에만 324,400건이 요청되었으며 이는 상반기에 비해(297,808건) 8.9%나 증가된 수치이다. 프라이버시를 위한 정보와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는 개인정보이지만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사용가능성과 필요성이 높다고 하더라도⁴⁰⁾ 이렇게 획득된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가 결합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새로운 정보가 생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 위치정보를 요구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뿐 아니라 통신자료의 경우에도 법원의 절차적인 통제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개인정보인 통신자료의 경

39) 헌재 2010.12.28, 2009헌가30.

40) 박정훈, 전가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법조 제645호, 2010. 6, 147면 이하.

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통신사실확인자료에서 개인위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허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⁴¹⁾

VI. 결론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석유나 광물 같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IT 기업들 뿐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들도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수익사업 및 영업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를 많이 확보하는 기업은 그만큼 높은 기업의 경쟁력을 갖게 된다. 특히 최근 들어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 가운데도 그 이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들은 개인위치정보와 다른 정보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에 대한 수요증가는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성을 높여주고 있으며, 개인위치정보 역시 침해의 빈도와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되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개인위치정보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개인정보로서의 보호 뿐 아니라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형사사법에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긴급구조를 위해서 경찰이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보호법이 개정되었으며, 수사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수사를 수행하는 정도가 높아지면서(소위 기지국 수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형사사법, 특히 긴급구조와 수사에 있어서 개인위치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 이미 개정된 위치정보보호법의 문제점 및 수사에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가능성과 보호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41) 법원의 허가 시스템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 다루는 것은 지면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기 연구 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긴급구조에 있어서 개인의 동의 및 개인의 생명·신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 구조요청자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대한 가능성은 높여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오·남용이나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긴급구조요청의 경우에는 보가 강화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 개인위치정보는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수사를 절대적으로 금지할 연유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와 같이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법원의 형식적인 허가나 법원의 허가도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글은 아직까지 개인위치정보와 관련한 형법분야의 논문이 많지 않은 가운데 관련 형법분야에서의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다소 서둘러 쓰여 졌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논의들을 담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 형사사법에 있어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려는 수요역시 민간기업 만큼이나 많아질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개인위치정보를 형사사법에서 이용하고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형법분야에서도 보다 심도 깊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조문헌

- 김봉수, “전자감시장치 부착의 법적 성격과 확대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고 제36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 박정훈,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법조 제645호, 2010. 6
- 배종대, 형법각론(제7전정판), 2010
- 안순태, “스마트폰 위치기반 광고와 상업적 표현의 가치”, 방송통신연구 제76호, 2011년 가을호
- 안순태/서수민, “스마트폰 위치기반광고 애플리케이션”, 한국광고홍보학회 제14권 1호, 한국광고홍보학회, 2012
- 이창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법적 성격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형사정책 제23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 장연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법적 성격과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제10권 제2호, 한국보호관찰학회, 2010
- 정혜영,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체계에 관한 분석”, 공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10
- 조운오, “GPS 위치추적 전자감시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지 제37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Study on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n Criminal Justice

Lee, Won Sang*

Personal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resource like as oil and mineral in modern information society. Companies obtaining much information are more competitive and profitable so, they strive to gather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on the rise these days, because it is being used in various service area in ubiquitous environment. Of course, the necessity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the same as investigative authority. But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a critical factor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Thus, it is protected not only b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ut also by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The us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was an issue in criminal justice. Above all, the issue was that ISP provide police with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of individuals in emergent situations. Thus,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was revised to reflect the situation. But the law still generates a variety of controversies. Also, investigative agencies want to us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n their investigation. Therefor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oblem regarding the us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n emergency relief and investigation.

In conclusion, the availability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should be raised in emergency relief. However, the punishment on the misuse of the information should be strengthened further. And it is not necessary to ban the us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n investigation, but the control of the court should be improved.

* Associate Research Fellow in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 Doctor of Laws.

- ❖ Key words :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Communication Data, Emergency Relief